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내부감사 기능의 효과성 및 가치 제고 방안」 및 4분기 동향

2024.12 카드뉴스

리더 메시지

『12월 Brief』는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내부감사 기능의 효과성 및 가치 제고 방안』 등을 소개하며, 『25~'27년 외부감사 적용 표준감사시간 확정』,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등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2025 Governance(이사회·감사위원회) Calendar』를 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내부감사 기능의 효과성 및 가치 제고 방안

新 국제내부감사표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감사위원회 감독 역할 제시

2024 New 국제내부감사표준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 감독·지침

- 신규표준의 이행에 대해 최고내부감사책임자(CAE)에게 감독·지침 제공
- CAE로부터 필요정보를 확보하여 이행을 위한 필수조건과의 일치 여부 확인

👉 자원배분·사전준비

- 신규표준 이행·준수를 위한 내부감사부서의 자원(예산·인력) 보유 현황 점검
- 준비도 평가 수행, 필요조치 식별 및 우선순위 설정
- 내부감사부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경영진, 외부감사인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와 변경사항, 영향에 대해 소통·협력

📊 성과·진행상황 모니터링

- 신규표준을 기대성과치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CAE에 내부감사전략, 성과목표·측정 관련 의견 제공

👤 내부감사 기능의 성숙도 제고

- 성숙도 제고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전략·자원 관련 논의 진행, 전략·성과목표·측정에 반영

* IIA(세계내부감사인협회)는 New 국제내부감사표준을 '24년 1월에 발표했고, 이는 '25.1.9부터 시행 예정

'25~'27년 외부감사 적용 표준감사시간 확정

'25.1.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용면제·부분적용 연장

자산총액 2백억원 미만 중소기업

▶ 표준감사시간 '27년까지 적용유예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

▶ 적용률 추가 인상하지 않고 '25년까지 부분적용* 연장

* '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는 '25년 하반기 중 위원회 심의 예정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노력,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 고려

🔍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근거 마련

🔍 기업별 구체적 특성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 보완

관계법령 정비사항 반영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

	변경	비고
비상장사	자산 5천억원* 이상: 검토 자산 5천억원* 미만: 면제	'23.5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상장사	자산 1천억원 미만 외부감사 면제 (대신 '검토' 의무 유지)	'23.1월 외부감사법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산 1천억원 이상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이사회는 의견서 작성·공시 등 주주이익 보호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
↳ 주주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 제고
•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공시

📌 비계열사 간 합병 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 전면 폐지
↳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 실질가치 반영
•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 의무화
↳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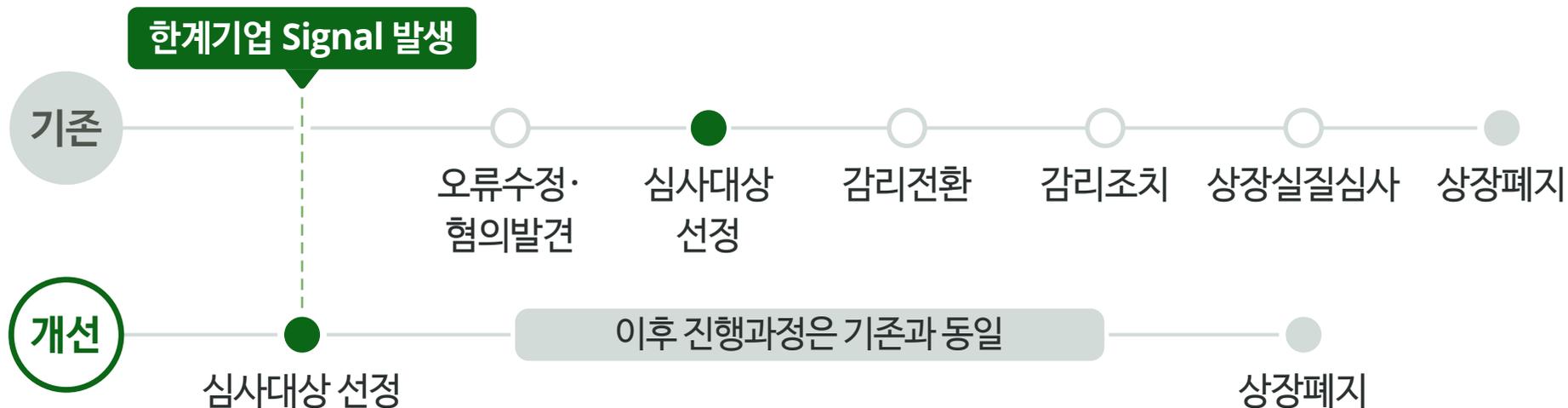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 향유 기회 제공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 삭제
↳ 기간 제한 없이 상장기업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해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

선제적 회계감리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퇴출

한계기업 징후(signal)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선순환 유도 예정

-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주식시장 신뢰 하락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 수: '18년 285개 -> '23년 467개, 63.9% 증가
- 한계기업 특징(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분석하여 징후 여부 판단 예정



외부감사 당부사항

-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해 면밀한 검증과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 한계기업 매출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 확보
- 부정행위 보고절차(감사위원회·감사에 통보)의 철저한 준수

2025 Governance(이사회·감사위원회) Calendar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2025 Governance Calendar'
(Mobile/PC 버전)를 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 드립니다.

*12월 넷째 주 배포 예정

//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세미나 성료

개요

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14:00 ~ 16:35

장소 |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3F)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및 Youtube 업로드 예정

공시 및 결산 업무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성 강화와 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Session I. 더욱 정밀하게 - 자금부정통제 공시 체크포인트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 작성 방법 제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대응 위해 경영진·감사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핵심 점검사항 제시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CoE 센터장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세미나

Session II.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 체크포인트

- 국내 밸류업 공시 현황 분석 및 국내 공시 준비사항 논의
-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 평가 포인트 및 공시 사례 소개



장준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합재무서비스그룹 파트너

Session III. 2024 회계연도 결산, 핵심준비사항은?

-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제1007호)의 적용 사례 소개
- 금융감독원 중점 심사항목과 관련된 감리 사례를 중심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준비사항 제시



김태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품질관리실 파트너

Session IV. 디지털 공시 및 결산 환경의 스마트한 대응

- 기업 공시환경 변화 대응 및 자금부정 통제 실태 점검 사례 제시
- 다트 컨버터, XBRL 컨버터, 사업보고서 컨버터 등 딜로이트 디지털 에셋(asset)과 연결효율화 서비스인 7 click 등을 활용한 사례 공유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수석위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